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9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 5. 1.), '20. 7. 2. 부터 시행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안 제3조)
- 다.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안 제4조, 제5조)
- 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안 제6조)
- 마.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안 제7조)
- 바.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안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개정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11. 0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마포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발생 (제7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 400억 발행
- 총 발행금액의 할인보전금 2%
- 추계기간: 5년(2021년부터 2025년까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출	계	800	800	800	800	800	4,000
	할인보전금	800	800	800	800	800	4,000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할인보전금 구비 예산 편성 필요

5.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신영자 (☎ 8572)